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전망

정성춘*

[국문요약]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이 조치가 초래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책협조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일본, 수출규제,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

I. 서론

최근 한일관계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그리고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으며 관계 복원의 빠른 수단도 찾기 힘들 만큼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양국 정부 사이의 신경전이 매우 날카롭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면서 하루 빨리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일본정부는 한국의 느슨한 전략물자 관리체제로 인한 부적절한 사안의 발생을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지적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의 국내법에 근거한 당연한 국내조치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정부와 협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정부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에 의거한 정당한 국내조치라는 주장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와 배상판결이 상호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역사문제와 수출규제문제에 대한 분리 전략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국 정부의 주장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한일관계의 악화가 어느 특정 사안에 의해 특정 시점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양국 간에 누적되어 온 상대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특정 시점에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폭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9년 7월이 되었을 뿐이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의 한일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크게 호전되었던 한일관계는 2012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간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파기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었고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갈등은 안보분야로도 확대되었는데 제주 국제관함식에 자위대함의 육일기 게양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찰기의 저공비행에 대한 우리나라 군함의 사격통제 레이다 조사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였고 이후 일본의 국제관함식에 우리해군을 초청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우리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한일갈등은 역사, 외교, 안보분야를 넘어 최근에는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국의 불매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일관계에서는 정치외교적 갈등이 격화되더라도 경제협력은 지속한다는 이른바 정경분리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 원칙마저 붕괴된 것이다. 최근에는 양국 국민들 간의 반일, 혐한 등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도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주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둘러싼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규제조치가 발생한 배경, 내용, 그리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양국 간 갈등해소의 핵심은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본고는 오히려 양국 간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조치가 더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고 그 영향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우려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공포감과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긴밀한 한일 간 분업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적 갈등이 양국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II. 본론

1. 일본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1) 수출규제조치의 경위 및 내용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의 발단은 2019년 7월 1일에 발생하였다. 당일 경제산업성은 돌연 ①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 카테고리 변경에 대한 의견모집절차 개시, ②특정품목¹⁾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²⁾ 수출관리상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되어 있던 한국을 이 카테고리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조치이다. 더구나 2019년 7월 4일부터는 백색국가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특정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할 경우 일본정부의 자의적 규제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아직 분명한 해석과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특정 3개 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중요 소재여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공포심이 크게 확산되었다.

<표 1> 일본의 대한(對韓) 리스트 규제 품목

품목	주요 용도	주요 일본 공급업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스마트폰 액정, 유기EL 패널 등의 필름 재료	-
레지스트(감광재)	반도체의 노광 공정에 사용(감광재) * 이번 규제 대상은 EUV(극자외선) 레지스트임.	JSR, TOK, Shinetsu Fuji Film, Sumitomo Chemical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세정공정에 사용(에칭가스)	Stella Chemifa, Morita Chemical

자료: 東洋經濟オンライン(2019. 7. 6).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①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국가(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삭제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였고, ②수출관리 상 개별 카테고리의 실무상 명칭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로 변경하였으며, ③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 절차를 통해 수출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되 정당한 민간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허가해 간다는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발

1) 특정품목으로는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세 개가 포함됨.

2) 경제산업성,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표하였다.³⁾ 이렇게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동년 8월 7일 공포되고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 수출관리 상 국별 카테고리

분류	해당 국가
그룹 A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국가/지역
그룹 B	국제수출관리레짐에 참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지역(그룹A 제외)
그룹 C	그룹 B와 D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국가/지역
그룹 D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2, 별표4의 국가/지역

자료: 경제산업성,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의해 한국은 이제 그룹A⁴⁾에서 그룹B⁵⁾로 분류되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트 규제대상 화물의 수출 및 기술 제공에 대해서는 일반 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대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대량과파무기나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신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른바 캐치올 규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 조치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 즉 리스트 규제대상 화물과 기술의 무역거래에서 이른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리스트 규제 이외 화물과 기술에 대해서도 개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크게 우려하였다. 첫째는 개별허가 품목의 허가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하여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얻지 못하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이고, 셋째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하여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의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수출규제(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할 경우에 대한 우려였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실제

3) 경제산업성,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4) 그룹A는 종전의 백색국가 그룹으로 수출관리 국제레짐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캐치올 규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출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5) 그룹B는 수출관리 국제레짐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들로서 그룹A를 제외한 국가

로 발생한다면 한국의 대일수입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쳐 한국경제가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여론전을 전개하고 WTO 제소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압박카드를 내비치면서 일본의 조치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먼저 개별허가품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살펴보자. 2019년 8월 7일,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포⁶⁾하였는데 여기에는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의 특정품목 이외로 추가된 품목은 없었다. 일본정부가 최소한 당시 시점에서 개별허가 전환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을 추가로 압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8월 2일에 발표된 문건에 명기된 바와 같이,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출심사를 거쳐 정당한 민간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금후 허가를 내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개별허가품목을 추가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019년 8월에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⁷⁾를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하였다. 이 인터뷰 조사에서 개별허가대상 품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의적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인터뷰 담당자는 일본정부의 자의적 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허가 심사자가 직면할 정치적 부담이 자의적 규제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이다. 일본의 수출허가 심사자가 수출허가를 요청받은 물자나 기술의 무기전용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불허할 경우, 향후 정권교체 등 정치적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자의적 규제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수출기업의 소송 가능성이다. 일본정부가 일본의 수출기업에 수출 불허의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출을 불허할 경우 일본 수출기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허가 심사자는 불허 대상이 되는 품목이나 기술의 무기 전용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기업이 수입하는 물자나 기술이 민수용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만 한다면 일본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수출통제는 불가

6) <https://www.meti.go.jp/policy/ampo/law09.html#包括010625> 참조.

7) <http://www.cistec.or.jp/> 참조.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4월에 설립된 민간의 비영리기관으로, 안전보장과 관련한 수출관리제도를 조사·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능하다는 것이 인터뷰 담당자 설명의 요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기업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필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터뷰 담당자는 결국 시간이 이러한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한국정부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일본정부의 수출관리 관련 조치들을 통해 완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답변의 핵심 요지였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첫 번째 우려 사항, 즉 개별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수출규제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려사항, 즉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리스트 규제대상 중 포괄적인 허가를 얻지 못하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 또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서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은 여전히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에 대해 종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발표된 직후에는 이 조치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는 품목들은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조건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수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⁸⁾.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이더라도 먼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엄격한 자수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약 1,500여 개 업체가 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거래하는 일본기업들은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허가가 요구된다. 다만 리스트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한일 간 무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개별허가를 통해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민수용 거래로 무기전용이나 제3국 재수출 용도가 아님을 증명할 경우 수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우려사항인 캐치올 규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 품목의 대부분이 개별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 품목의 ‘개별적인 수출안건’으로서 대량살상무기개발이나 여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

8) 이러한 점들에 대해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CISTEC,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に関連する法制度運用についての誤解：混乱回避のために正確な理解を」(2019年8月5日), <http://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05setumeishiryō.pdf>

다고 판단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그 ‘개별 수출안전’에 대해서만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치올 규제가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 품목을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모든 수출자에게 일률적으로 허가를 요구하는 규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 있어서 캐치올 규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본다.⁹⁾

3) 수출규제조치 이후의 수출규제 동향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발동한 이후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8일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를 공표하였다. 당시 세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엄격한 심사¹⁰⁾를 통해 안전보장 상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점이 확인된 최초의 안전에 대해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발언¹¹⁾하였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 LSI에 사용되는 신에쓰화학(信越化学)의 EUV용 포토레지스트로 추정되었다. 경제산업성 장관은 “개별 수출 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라는 비판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하였다.¹²⁾ 스가 관방장관은 “금수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관리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엄격한 심사를 실시,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8월 30일 불화수소의 수출 1건을 허가하였고 9월 30일에는 불화 폴리이미드 1건, 불화수소 2건의 수출을 허가하여 2019년 10월 초 현재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품목에 대해 총 7건의 수출허가(불화수소 3건, EUV용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폴리이미드 1건)가 나왔다. 7월 4일에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품목에 대해 최대 심사기간인 90일 이내에 수출허가가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신청건수 및 허가건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여 한일 간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9) 일본의 안전보장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기초적 설명은 다음의 문건을 참조할 수 있다. CISTEC,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関連する日本の制度運用についての基礎的解説」(2019년 8월 2일), http://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02kankokumuke_kaisetu.pdf

10)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허가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① 수출하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량 등을 기입한 신청서, ② 수출 대상 기업이 군사전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등의 서류를 받은 뒤 해당 기업에게 청취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7종의 서류, 무기전용 우려가 더 높은 불화수소는 9종의 서류 제출 필요(예: 수입선 한국기업의 조달실적, 최종제품 생산 상황, 군사전용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

11) 「韓国への輸出管理厳格化後 初の輸出許可 経産省」『NHK NEWS WEB』(2019. 8. 8).

12) 「韓国向け輸出を許可、半導体材料、厳格管理後で初、経産相「審査踏まえ判断」。『日本経済新聞』(2019. 8. 8).

2. 일본 수출규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1) 일본 수출규제의 원인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왜 수출규제조치를 갑자기 내놓았는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징용노동자 배상판결 등 누적된 역사문제를 둘러싼 불만에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수출규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산업성이 제기한 한국의 수출관리 상의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갈등의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정부의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모집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제시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 의견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을 담은 문서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¹³⁾. 다음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이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 제도의 미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한일 양국 간의 정책대화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백색국가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둘째, 그런데 최근 몇 년에 걸쳐 한일 간의 기밀정보를 포함한 양국 당국 간의 진지한 정책대화가 일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신뢰가 깨지게 되었다. 셋째, 그 동안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을 백색국가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운용해 왔으나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한국을 더 이상 백색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일반국가와 동일한 대우를 하게 되었다. 넷째, 한국의 수출관리 집행체제는 110명의 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 이 인력에는 이 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인력이나 민간기관의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만을 보면 11명에 불과한 바 집행체제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략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7월 1일에 발표한 문서¹⁴⁾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수출관리제

13)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결정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총 40,666건의 의견이 있었고 95%가 찬성, 1%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정부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반대의견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시한 답변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요약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완전한 의견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한 문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に関する意見公募の結果について」(2019年8月2日),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91010>

14) 경제산업성,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참조.

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이 검토해 본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는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에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표 3>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의 일부

한국정부의 의견	일본정부의 답변
• 정령 개정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정부는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하나 7월 1일 공포의 통달개정에 있는 대한민국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관리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대항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한국정부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제도를 적절히 운영. 일본이 근거도 없이 한국의 제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한국은 2019년 3월 이후 제7회 협의회 주최자국인 일본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어떤 연락도 없었다. •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도로 한국은 일본 경제산업성 주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매년 참가하여 의견 교환을 했다. • 한국의 수출통제 담당인력도 일본의 주장과 달리 110명 정도 있어서 적절, 효과적으로 무역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의 백색국가 중에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 바, 이를 도입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 일본은 백색국가들 중 정기적인 전략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서 한국을 이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차별	•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규제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심사체제도 부실하다. • 이전에는 한일 간 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운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있었으나 최근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사라졌다. 이에 일본은 종래 한국에 대해 실시한 우대조치를 철회한다. • 한국의 캐치올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외무역법 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50조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대상으로 하나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일본은 한일 간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대화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번 합의한 일정도 포함하여 한국 측 사정에 의해 일정이 연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일정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한국측의 의견을 보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과의 신뢰관계 관점에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산업성 주최 수출관리에 관한 세미나와 기밀정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정책대화는 성격이 다르다. • 110명의 인력에는 무기나 원자로 전용품 수출입 업무 담당자, 민생품이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기관의 직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의거해 보면 무기전용가능한 민생품의 수출허가제도 구축, 심사나 검사에 관여하는 담당과 직원은 11명이며 더구나 여기에는 무역보험이나 다이아몬드 수출관리 담당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자료: 경제산업성,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に関する意見公募の結果について」(2019년 8월 2일),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91010>

그러나 일본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의 미비나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만을 가지고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일본정부는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안부문제나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 등 누적된 갈등이 있었고 일본의 여러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수출규제라는 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의 중국압박의 사례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전보장과 경제문제를 상호 연계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이러한 움직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자민당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경제회의”를 창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수출관리가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 국방권한법(2019)과 미국수출관리개혁법에 따라 지금까지의 무기전용가능 기술에 더해 인공지능, 하이테크, 인프라기술을 안전보장의 대상으로 하고 2018년 10월부터 이에 대한 수출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중국제조 2025와 거의 중복되는 14개 분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미국의 수출관리강화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강화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대중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는 그 원인이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의 조치가 단순한 무역관리상의 조치인 경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역사문제 및 안보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역관리 차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사 및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노력 등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일본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

일본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다행히 현재까지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본 수출당국이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의 수출을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가, 시간은 걸리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기업의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한일 간 무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상담하고 우리기업의 재고확보를 위한 운전자금지원, 국산화 혹은 타국/타지역에서의 대체조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기업의 부품, 소재, 장비 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나 조달선 다변화 등

의 정책은 일본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최종재 생산기업의 탈일본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수출규제를 자제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의 생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였다¹⁵⁾. 분석모형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¹⁶⁾이며 시나리오는 다음의 표와 같다. 첫째 시나리오는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모형을 구분하였는데, 모형1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차별화된 독점적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우리나라 생산감소를 외국 경쟁기업이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모형2는 우리나라 생산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 경쟁기업이 공급부족을 대체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약 0.32~0.38% 감소하고 수출은 약 0.35~0.5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일본의 수출규제 시나리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분석 시나리오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수출규제 강화	• 한국 반도체 생산 10% 감소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 일본의 대한국 화학 수출 5% 감소 ¹⁾ • 일본의 대한국 전자 수출 5% 감소 • 일본의 대한국 기계 수출 5% 감소

자료: 정성준 외(2019)

주: 1)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약 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5> 반도체 생산 10% 감소의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

(단위: %)

반도체 생산 10% 감소	모형 1 (독점적 경쟁)	모형 2 (완전 경쟁)
GDP	-0.320	-0.384
수출	-0.347	-0.579

자료: 정성준 외(2019)

주: GTAP DB v10(2019.7)를 이용하여 추정

15) 정성준 외(2019),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pp. 7~9.

16)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GTAP DB v.10(2019.7)을 이용하였다.

한편, 대일의존도가 높은 화학, 기계, 전자산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5% 감소하는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약 0.015~0.025%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했을 때 이들 산업에서의 대일수입이 약 5% 정도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반대의 경우 즉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로부터 제외할 경우 대일수입이 약 5% 정도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다만, 충격에 따른 조정과정(수입선 다변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큰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가정한 생산 및 무역의 감소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영향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표 6> 일본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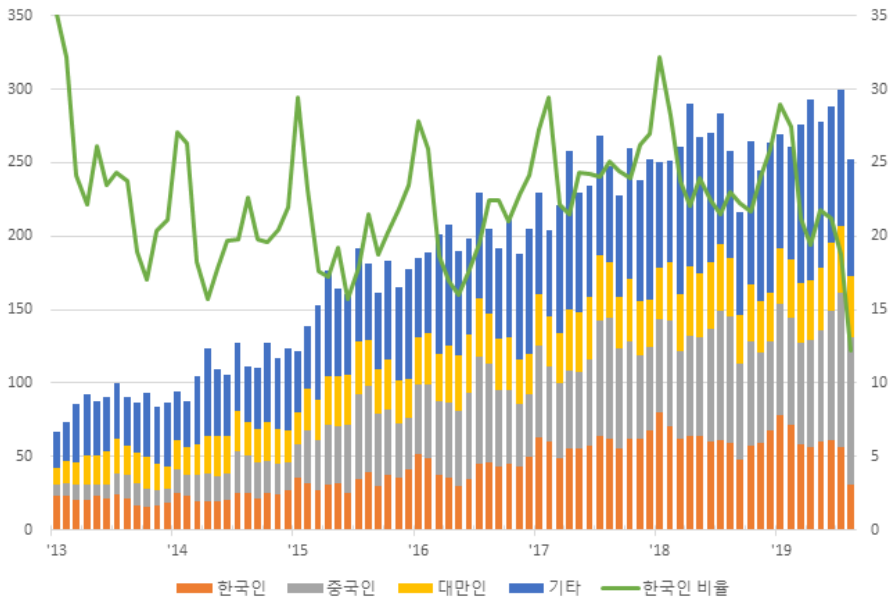
	일본의 대한국 화학수출 5% 감소	일본의 대한국 전자수출 5% 감소	일본의 대한국 기계수출 5% 감소
GDP	-0.025	-0.015	-0.020
수출	-0.036	-0.026	-0.027

자료: 정성춘 외(2019)

한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에 반해 일본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초의 예상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에 대한 반발로서 한국은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자제로 대응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의 대응이 일본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9월 약 60% 감소하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9월 신차등록 일본수입차는 1,103대로 전년 동월의 2,744대에 비해 59.8% 감소하였다. 맥주시장에서도 일본수입맥주의 점유율이 16%에서 2개월 만에 1.5%로 급락하였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도 급감하였는데 금년 8월 일본방문 한국 관광객은 약 31만 명으로 전년 동월 약 60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큐슈 등 한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대마도의 경우 약 90%를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만큼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국별 일본 입국자수 및 한국인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우측))



자료: 일본정부 관광국(JNTO)

위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국의 갈등은 양국 모두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한국경제는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국산화나 대체조달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부품과 소재의 생산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이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평적인 분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일본에는 매출규모는 작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기술 강소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부품소재의 기술적 성격은 다루기 힘든 다양한 소재를 정교한 공정을 통해 가공하는 노하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국민성과도 매우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량생산과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출 등 경영적 노하우를 요구하는 최종재 생산에 더 적합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절묘한 수평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면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생공영의 사업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분업구조가 약화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최종재 생산에 소요되는 다종다양한 부품소재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대체재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기업에게도 양국의 수평적 분업구조의 약화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전자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는 산업이 바로 부품과 소재 관련 산업이다. 최종재 생산은 한국에 넘겨주면서 일본은 여전히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지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가 일본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압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최종재 생산기업은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다. 한일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탈일본화가 진행된다면 일본 부품소재기업으로서는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부품소재기업들이 일본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조치에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일 갈등의 원인이 중층적이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동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용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수출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먼저 지금까지의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 점검해 보자. 우리정부는 주로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힘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의 동조를 얻는데도 실패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일본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도 일본에 타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본의 백색국가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의 순수한 제도적 수정이 목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을 압박하거나 타격을 가할 목적이 아닌 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는 수출허가를 받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여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갈등의 범위가 더 확대될 우려조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양국 간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간의 갈등요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차원에서는 양국 경제단체의 교류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갈등으로 인하여 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갈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대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만연으로 인한 국제무역질서의 교란이 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도 제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해소를 촉구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관광, 문화, 인재교류 등 다양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교류를 통해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당국이나 언론보도로 불필요한 불매운동이 양국에서 확산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각 분야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나 경제 분야에서의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일본의 수출관리당국과의 정책협조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불신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일본 당국으로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WTO 제소를 통해 한일 간 양자 협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한다면 양국 당국 간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보장과 경제를 연계시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는데 미중 통상마찰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정세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정책은 이와 같은 세계정세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다. 다만, 국산화 정책은 기업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여야 하며 재정자금 투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국산화 정책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까지의 정책동향을 볼 때, 향후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이 수입품의 최종 용도가 정당한 민간경제활동이라는 점을 보인다면 일본의 규제당국은 민간기업과의 소송 가능성이나 정치적 문제로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허가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정용노동자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수출규제가 초래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당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의 정책협력채널을 복원시켜 일본의 자의적 규제라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규관 외(2019),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기초자료) 19-11).
- 정성춘 외(2019),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세계경제포커스 19-35).
- CISTEC,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関連する日本の制度運用についての基礎的解説」(2019年8月2日), http://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02kankokumuke_kaisetu.pdf
- _____,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に関連する法制度運用についての誤解: 混乱回避のために正確な理解を」(2019年8月5日), <http://www.cistec.or.jp/service/kankoku/190805setumeishiryo.pdf>
- 日本経済新聞(2019. 8. 8), 「韓国向け輸出を許可、半導体材料、厳格管理後で初、経産相「審査踏まえ判断」。
- 安全保障貿易管理,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09.html#包括010625> (이용일: 2019년 8월 7일).
-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이용일: 2019년 8월 2일).
-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に関する意見公募の結果について(경제산업성),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91010> (이용일: 2019년 8월 2일).
- 韓国への輸出管理厳格化後 初の輸出許可 経産省(NHK NEWS WEB),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21295.html> (이용일: 2019년 8월 8일).
-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이용일: 2019년 7월 2일).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https://toyokeizai.net/articles/-/290833> (이용일: 2019년 7월 6일).